

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이 전면으로 확대되고 운영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



# 공중이용시설 전·면·금·연

## ◆ 금연법령 관련 공중이용시설

- 공공기관 청사, 지방공기업의 청사
-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·청소년 이용시설
-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- 공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복합건축물
- 공연장, 대규모점포, 관광숙박업소, 목욕장, 사회복지시설
-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- PC방 (현재 금연, 흡연 구분이나 13. 6. 8 전면 금연)
- 150㎡이상의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- 학교, 유치원, 의료기관, 어린이집
-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
- 만화대여업소, 도서관

**관리자 의무사항**  
해당시설 전체를  
금연구역으로 지정

### 운영기준

- ▶ 청사, 학교, 의료기관, 어린이집 : 부지 및 부대시설 포함
- ▶ PC방: 13. 6. 8 시행
- ▶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 (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공간)
- ※ 학교, 의료기관, 어린이집, 어린이·청소년 이용시설은 출입구로부터 10m내 흡연실 설치 금지

### 시설전체 금연구역

### 과태료

- ▶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: 500만원 이하
- ▶ 흡연자: 10만원

# \* 국민건강증진법 \*

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·방법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〈개정 2011.6.7〉 〈시행일 2012.12.8〉

1. 국회의 청사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3. 「법원조직법」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
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
6. 「유아교육법」·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[교사(校舍)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]
7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교사
8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보건의료원·보건지소
9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10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 특화시설, 청소년 야영장, 유스호스텔,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
11.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1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1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4. 공항·여객부두·철도역·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·승강장,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
15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
16.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7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18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19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20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 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2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2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목욕장
23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〈시행일 2013.6.8〉
24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
25. 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른 만화대여업소
2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
